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4. 12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4월 12일
다. 상정일자: 제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文忠實)

가.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 및 동법시행령(제정 1993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3915호), 동법시행규칙(제정 1993년 7월 31일 총리령 제429호),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정 1993년 8월 17일 총리령 제430호), 폐기물관리법(전문개정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장려금 등의 지급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안 제4조)

2) 재활용추진협의회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범위내 수당·여비 등 실비 지급(안 제5조)

3) 보고 및 검사 등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할 수 있다.(안 제6조)
○관계 법규 발췌—유인물 참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趙大顯)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입안한 것으로 영등포구조례(안) 제7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준칙(안)과 94. 3. 25 서울시가 확정한 조례와 다르게 입안 되었음.

1) 영등포구 조례(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각 구조례 제정준칙 제7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과태료부와 납부통지서 등 서식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이는 서식이 자주 변경될 소지를 감안하여 시 조례와 다르게 한 것으로 여겨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 영등포구 조례(안) 제7조의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로 하여 서울시 조례 제7조 제2항이 정한 7일과는 상이하게 제정하였으나 이는 88. 12. 26개정된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맞추어 정정한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3)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등포구청장의 요청(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15
----------	-----

제출년월일: 1994. 2.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 및 동법시행령(제정 1993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3915호), 동법시행규칙(제정 1993년 7월 31일 총리령 제429호),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정 1993년 8월 17일 총리령 제430호),

폐기물관리법(전문개정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장려금 등의 지급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안 제4조)

나. 재활용추진협의회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 협의회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범위내 수당·여비 등 실비 지급(안 제5조)

다. 보고 및 검사 등

-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할 수 있다(안 제6조)

(관계 법규 발췌)

1) 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

- 객석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 제21조)
- 목욕장(공중위생법 제2조)
- 백화점(도·소매 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
- 객실 30실이상 숙박업소(공중위생법 제2조)
- 160제곱미터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 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도·소매 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

2)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다량 배출자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라. 과태료 부과 징수 등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함(안 제7조)

마. 청문

-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8조)

바.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될 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안 제9조)

사. 규칙제정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3조)

3. 관련법규——법규집 별도 배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9조, 제41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22조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4. 조례안 : 별첨

5. 참고사항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 타 : 입법예고('94. 1. 10~'94. 1. 31)결과 특별한 의견없음

○관계법규 및 조례 주요내용 발췌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정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 3 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구 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

②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 7 조(과태료 부과·징수등) 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

제 9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